

IPTV서비스 도입방안

통신법 · 방송법 아닌, 제3 입법 바람직

〈김승모 정보통신부 통신전파방송정책본부 융합전략팀 행정사무관〉

1. IPTV의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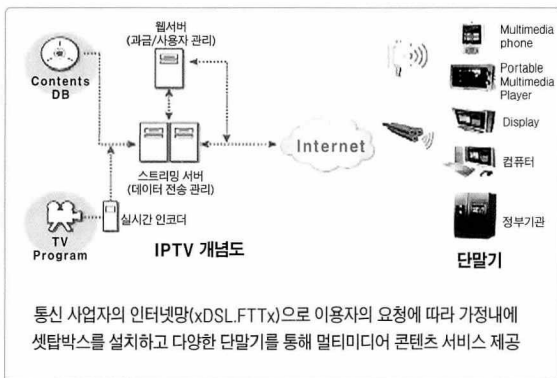
IPTV란 초고속인터넷망을 이용하여 이용자의 요청에 따라 실시간방송프로그램, 영상콘텐츠(VOD), 인터넷 접속, 전자상거래, 온라인게임 등 다양한 멀티미디어콘텐츠를 다양한 단말기를 통해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IPTV'라는 표현은 TV라는 단말 유형 또는 TV방송이라는 콘텐츠 유형에 초점을 맞춘 용어이나, IPTV는 다양한 디스플레이, PC 등 여러 종류의 단말을 통해 제공되는 다양한 형태의 맞춤형, 개인화된 콘텐츠를 제공하는 양방향 통신 · 방송 융합서비스를 포괄하는 의미이다. 해외의 경우 OECD는 Broadband Audio - Visual Service 또는 Internet Video, 미국은 IPTV, 영국은 Telco TV, 프랑스는 TV over DSL, 일본과 홍콩은 Broadband TV 등 다양한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통신사업자가 준비 중인 IPTV의 내용은 인터넷검색, 전자상거래, 게임, 문자메시지(SMS) 등 기존의 통신서비스와 실시간 다채널방송프로그램 전송과 같은 기존의 방송서비스 뿐만 아니라, 주문형영상서비스(VOD), 방송프로그램 연동 데이터서비스와 같은 통신과 방송의 융합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포함한다.

IPTV서비스의 유형



IPTV 개념도



2. IPTV서비스의 성격

IPTV서비스는 통신망(인터넷망)을 이용하여 VOD, 정보검색, 전자상거래, 게임, 문자메시지(SMS) 등의 통신서비스와 실시간 다채널방송프로그램 전송과 같은 방송형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하는 방송통신 융합서비스로서 인터넷망을 이용한 양방향성, 이용자 참여와 선택 허용, 채널 구성의 다양성 · 무한성, 다양한 응용서비스 발전가능성 등이 특징이다. 또 IPTV서비스는 직접사용채널의 운영 없이 방송사업자(PP 등) 등으로부터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전달

하는 전송사업의 성격을 가진다. 반면, 종합유선방송(CATV)사업자나 위성방송사업자는 자기가 직접 방송채널을 제작·송출한다.

IPTV사업자에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업자는 방송법상 방송사업자(방송콘텐츠) 또는 전기통신사업법상 부가통신사업자(일반콘텐츠)이다. IPTV 사업자가 직접 방송프로그램을 기획·제작·편성하기 위해서는 방송법상 방송사업자(PP)의 지위를 별도로 획득하여야 한다.

구분	사업자	사업내용	규제이슈	적용법률	주무부처
콘텐츠 (content)	양방향 콘텐츠 (non-linear content) 사업자 (CP 등 부가통신사업자)	콘텐츠 공급 (SMS, 게임, 인터넷, 오락, VOD)	내용심의	전기통신사업법	정통부
	일방향 콘텐츠 (linear content) 사업자(PP 등 방송사업자)	콘텐츠 공급 (실시간 방송)	내용심의의 광고 편성	광대역융합 서비스사업법 (방송법 준용)	방송위 (정통부)
전송 (carriage)	전송사업자(KT, 하나텔레콤, 데이콤 등 기간통신사업자) 다음, 네이버 등 인터넷포털 고품TV등 인터넷 방송사업자	가입자 관리 요금부과	동등접근 공정경쟁 이용자 보호	광대역융합 서비스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준용)	정통부 (방송위)

3. IPTV 도입의 기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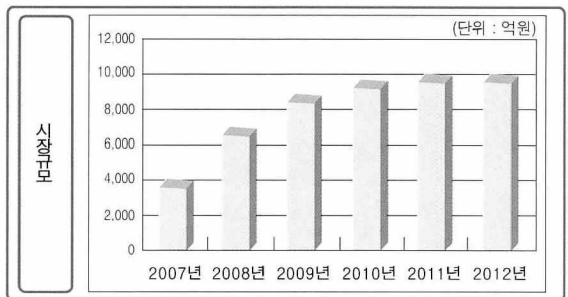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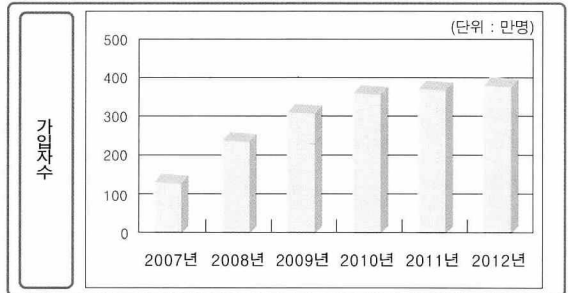
IPTV는 기존 통신·방송과 달리 이용자의 다양한 요구를 한 차원 높은 수준에서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신규 서비스이다. VOD, 인터넷, 실시간방송 및 양방향 서비스 제공 등 고품질의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제공한다. IPTV의 등장으로 인한 전송서비스 시장의 경쟁 확대는 매체의 다양성 확보, 이용자의 선택권 확대 및 이용자요금 인하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통신·방송 융합에 적극 대응하여 IPTV와 같은 새로운 융합서비스의 도입을 통해 신성장 동력 산업 활성화 및 국가경쟁력 제고를 기할 수 있다. 통신·방송 융합은 콘텐츠·서비스·네트워크·단말기로 이어지는 IT 가치사슬의 선순환 고리를 형성하며 발전하는 신산업의 중추적 영역이다. IPTV는 네트워크의 고도화 촉진, 방송의 디지털화 촉진, 다양한 신규 서비스 창출 및 D-TV·셋톱박스 등 관련기기 산업 활성화 및 고용 증대에 기여할 것이며, 그동안 유료방송 채널수의 제한과 관련 사업자의 독점적 지위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던 콘텐츠 사업자(PP, CP)들의 채널 확보를 보다 용이하게 함으로

써 콘텐츠 사업자의 수요기반을 확충하여 콘텐츠 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MRG(2005)에 의하면 전 세계 IPTV 시장은 2008년까지 연평균 가입자는 79%, 시장규모는 102%로 고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전 세계 IPTV 가입자는 2004년 190만 명에서 2008년 2,500만 명, 시장규모는 6.4억 달러에서 72억 달러로 급성장할 전망이다.

국내시장의 경우, ETRI(2005)의 전망에 따르면 2006년 서비스 개시를 전제로 가입자는 연평균 34% 증가하여 2012년 400만 명으로 성장하고, 사업자의 서비스 매출액은 2012년에 1조원에 이르고, 설비투자는 2012년까지 총 3.7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측되며, IPTV 도입으로 인한 산업유발효과는 2006~2012년 7년간 생산유발효과 12.9조원, 고용창출효과 7.3만 명으로 예상된다.

국내 IPTV 가입자 및 서비스매출액 전망(자료 : ETRI, 2005)



4. 국내 도입 추진 현황

정보통신부는 참여정부 역점사업인 IT839정책의 하나인 광대역통합망(BcN)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2004년부터 BcN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다. 2004년 8월과 2005년 3월 2차례에

걸쳐 옥타브(KT), 광개토(데이콤), 유비넷(SKT, 하나로텔레콤), 케이블BcN(수원방송) 등 4개의 BcN 시범사업자를 선정하였다. 옥타브(KT) 등은 BcN 시범사업의 주요사업의 하나로 IPTV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5년 12월 KT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을 제외한 상태에서 IPTV 시험서비스를 개시한 바 있다. 최초 계획과는 달리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참여가 원활하지 못해 실시간방송을 제외하고 시범서비스를 실시한 것이다. 2004년~2005년간의 1단계 BcN 시범사업에 이어 2006년부터 2단계 BcN 시범사업이 진행 중이다. 정보통신부는 2006년 5월 2단계 BcN 시범사업 컨소시엄으로 옥타브(KT), 광개토(데이콤), UbiNet(SK텔레콤), 케이블BcN(C&M)을 선정하여, 1단계에 이어 광택역용합서비스 등 BcN 시범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IPTV 시범사업 주요 내용

구 분	C-큐브 (KT 주관)	Daum (Daum 주관)
참여 업체	지상파 4사, KT, SKT, 하나로텔레콤, BBC, CNN 등 52개 업체	KBS, Daum, 씨디네트웍스, 등 10개 업체
총 사업비	240억원	33억원
시범 가구	서울, 양평 350가구	서울 역삼동, 의왕시 100가구
특 징	T-빙킹, T-커머스, VOD 등 다양한 융합서비스제공	국내 최대 온라인 포털 다양한 VOD, 게임 등 제공
망보유 여부	보유	미보유

정보통신부와 방송위원회는 작년 8월 16일 양 기관장이 참석한 통신방송교위정책협의회에서 IPTV의 원활한 도입을 위해 정통부·방송위 공동으로 IPTV 시범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했다. 이후 양 기관의 실무협의를 통해 공동시범사업계획을 공동으로 마련하여 발표하고, 공모를 통해 시범사업자로 선정된 C-Cube(통신업체), 다음(Daum 등) 등 2개 컨소시엄이 11월말 시범서비스를 개시하여 연말까지 시범서비스를 제공했다.

현재 IT 세상에서는 인터넷망과 신기술을 활용하여 실시간 방송콘텐츠 전송 이외에도 다양하고 혁신적인 융합서비스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꿈TV, 인터넷동영상포털, 판도라TV, 유패TV, 하나TV 등 다양한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등장하고 있다. 인터넷동영상서비스의 활성화로 작년부턴 UCC가 크게 유행하고 있다.

하나로텔레콤은 작년 7월부터 VOD 중심으로 우선 상용서비스를 도입했고, 법제도가 정비되면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LG데이콤, 인터넷포털인 다음 등도 올해중에 IPTV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IPTV 관련 해외사례

국내에서 IPTV의 법적 성격과 규제방향에 대해 관련 기관간, 이해당사자간 이견이 있는 상황이지만 외국에서는 30여개국 200여개 사업자가 이미 IPTV를 도입했다. 외국의 서비스 도입과 법제 정비 사례의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OECD(2004년) 보고서에 의하면 IPTV를 현행 방송의 개념과는 다른 특성을 지닌 영역으로 보고 있다. IPTV는 내용이 사적(private)이지 않다는 점에서 통신과 다르며, 쌍방향성·이용자의 참여와 선택행위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전통적인 방송의 개념과 다르므로, IPTV는 규제적용 측면에서 '회색지대'에 속한다고 보고 있으며, 대부분의 OECD 회원국들은 Internet Video(인터넷을 통한 비디오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방송으로 보지 않으며, 방송 규제도 적용하지 않고 있다. 30개 회원국 중 벨기에, 캐나다, 독일, 룩셈부르크, 스페인 등 5개국만이 방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방송으로 규정한 국가 중에도 벨기에, 스페인은 이에 대한 재검토를 추진 중이고, 캐나다는 방송으로 보면서도 방송법에 의한 규제를 배제하고 있다.

EU는 2003년 통신·방송 융합환경에 대응하여 통신·방송사업의 구분을 없애고 전송사업(transmission)과 콘텐츠사업(content)으로 분리 규제하는 수평적 규제체계 도입을 회원국에 권고하였다. 이에 따라 통신사업, 방송사업의 구분 없이 전송사업자는 통보(일반인가)만으로 진입이 가능토록 규제를 완화하고 콘텐츠사업자에 대해서는 자국의 사정과 콘텐츠의 성격에 따라 진입 및 내용규제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25개 회원국 중 24개국이 자국의 통신방송법령을 정비하여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했다.

세계 각국의 통신·방송 융합 대응 추세는 통신·방송 상호 진입 허용, 규제완화를 통한 경쟁 확대, 신규서비스의 원활한 도입 및 활성화 촉진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미국은 1996년

통신법을 개정하여 통신·방송사업간 자유로운 상호진입을 허용했고, 신규 융합 서비스에 대해 시장기능에 의한 자율조정을 원칙으로 하는 Hands-off Approach 입장을 견지하고 있으며, AT&T, 버라이즌 등의 통신사업자들이 IPTV를 제공 중이다. 영국은 2003년 통신·방송통합법을 제정하여 수평적 규제체계를 도입하고 최소한의 규제원칙(Light Touch Regulation)에 따라 통신·방송 규제를 최소화해 나가고 있으며, 2000년에 이미 IPTV를 도입했다. 일본은 2001년 전기통신업무이용방송법을 제정하여 진입규제를 등록제로 완화하여 2003년 IPTV를 도입했다. 프랑스는 2004년 제3의 법인 전자커뮤니케이션 및 시청각커뮤니케이션에 관한 법을 제정하여 법제를 정비했으며, IPTV는 신고만으로 진입이 가능하도록 하여 2003년 서비스를 개시했다. 독일은 1997년 통신·방송융합서비스를 규율하는 제3의 법률들을 제정하여 '미디어서비스'나 '텔레서비스'에 대해 별다른 진입규제 없이(면허 또는 신고 의무가 없음) 시장 진입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도록 했다. 올 1월 텔레서비스법과 미디어서비스법을 통합한 텔레미디어법을 제정했다.

6. IPTV 도입방안

시장이 원하는 새로운 방송통신융합서비스 도입으로 이용자 복지증진을 위한 조속한 법제정비가 필요하다. IPTV는 융합서비스의 성격상 기존 통신법이나 방송법의 틀 내에서는 수용 곤란하므로 제3의 입법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리고, IPTV에 대해 수평적 규제체계를 우선적으로 적용하

여 전송사업인 IPTV사업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되, 방송콘텐츠에 대해서는 방송법의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전송사업인 IPTV의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해 등록제 적용, 사업구역제한 등 진입규제를 완화하고, IPTV서비스 중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심의·편성·광고 규제는 방송법을 준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나, 전송사업자간, 전송-콘텐츠사업자간 공정경쟁 등 방송통신융합 환경에서 공정경쟁 관련 규제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7. 결론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을 활성화하고 이용자의 편익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융합환경에 맞는 정책 틀 마련을 위해서는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야 한다.

첫째, 방송법과 통신법을 준용한 제3의 입법을 통해 IPTV를 조속히 도입하여 관련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이용자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현행 통신과 방송의 규제체계를 통신과 방송의 구분 없이 전송(carriage)과 콘텐츠(content)로 이원화하여 전송 부문에 대해서는 경쟁 확대를 통해 이용자가 다양한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도록 하는 한편 콘텐츠에 대해서는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이용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셋째, 통신과 방송의 융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통신과 방송으로 나누어진 정책추진체계와 규제기관의 합리적 개편이 필요하다. 융합시대의 새로운 통합기구인 통방융합이 일어나는 콘텐츠, 네트워크, 서비스, 단말기 전 영역에 대한 효율적이고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통신방송 융합시대에도 다양성, 다원성 등 방송이 지켜야 할 공익성은 확고하게 보장되어야 하며, 융합시대에 걸맞게 공익성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

그동안 산적해 있는 통방융합의 정책적 이슈들이 조속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통신계와 방송계가 상생협력하려는 의지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다행히도 범정부차원에서 통방융합 문제 해결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정책적 이슈들이 발전적인 방향으로 조속히 해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